

제351회 임시회
2015. 10. 07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 계획(안)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9월 27일
-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출연목적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·운영하는 (재)충북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

□ 출연 예정액 : 8,150,000천원(도비 100%)

- 출연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2항
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2항
- 산출근거 :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4,800,000천원
충북연구원 운영 3,000,000천원
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 350,000천원

※ 증가내역(5,400백만원) : 연구원 청사 신축비 출연금 총당분 4,800 + 2017년 연구원 자체 수입 감소분 600

□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6년			2017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2,750,000	2,750,000	-	8,150,000	5,400,000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,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충북연구원은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운영재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음.
- 따라서, 충북의 싱크탱크(Think tank)로서 도정지원 및 수준높은 연구성과 제고와 2017년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 출연금이 필요한 바,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수탁과제 전입금 및 기금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바, 자체수입 증대 노력 등 자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< 연도별 출연 내역 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합계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출연금	15,033	1,600	1,300	1,300	1,600	1,733	2,000	2,750	2,750

2017년도 충북연구원 출연금 내역

□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비

○ 총 사업비(충북개발공사 추정액) : 128억원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사업비	비고
공사비(예정가)	10,224,000	· 건축비 : 총 118억원 ※ 조달청 공공건축물 건축단가 반영
설계비	615,075	
시설부대비	1,037,200	
예비비	1,000,000	· 위수탁수수료, 감리비 등
총계	12,876,275	

※ 현재, 설계제안공모 기간중으로 세부 산출내역은 최종 설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음.

○ 출연금 : 48억원 ※ 총공사비 128억원(연구원 기금 80억원, 출연금 48억원)

□ 특별연구조직 운영(공공투자분석센터)

구 분	2016년	2017년	증감 내역
합계	350,000천원	350,000천원	-
사업비	173,000천원	173,000천원	
	· 사전예타 3건 · 투융자 4회 · 연구과제 1~2건	· 사전예타 3건 · 투융자 4회 · 연구과제 1~2건	
인건비	177,000천원	177,000천원	
	· 센터장 1인 · 박사 1인 · 석사 2인	· 센터장 1인 · 박사 1인 · 석사 2인	

※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 없음.

□ 충북연구원 운영비

○ 출 연 금 : 30억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금 액	비 고
세 출	2017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(A) ※ 청사신축비, 공투센터 제외한 순수 운영비	3,916,078	▶ 2017년 충북연구원 운영비 총액에서 연구원 자체수입 증당분을 제외한 금액 30억원을 출연금으로 요청
세 입	2017년 충북연구원 자체수입(B)	916,078	
	2017년 도 출연금(C=A-B)	3,000,000	

○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항 목	2016	2017	증 감	사유	
합 계	4,066,516	3,916,078	△150,438	· 전년대비 운영비 약 1억 5천만원 절감 편성	
기관 운영비	소 계	3,411,307	3,257,717	△153,590	
	인 건 비	2,450,298	2,522,541	72,243	<증액내역> : 72,243천원 · 신규 연구직(1명, 16년 4월 채용) 보수 인건비 증가분 반영(12개월 적용) : 16,424천원 · 정근수당 등 제수당 증액 : 11,943천원 · 비정규직차별금지법에 의한 행정원 보수 현실화 및 처우개선비 반영 : 43,876천원(5명, 기본급 및 제수당 반영)
	경 비	834,600	735,176	△99,424	· 예산 절감을 위한 경비 최대 긴축편성
	예 비 비	126,409		△126,409	· 예산 절감을 위한 예비비 미편성
연구 사업비	소 계	655,209	658,361	3,152	
	자체사업	655,209	658,361	3,152	<증액내역> : 3,152천원 · 발간물(지역정책연구, 동향전망대) 인쇄비 등 물가상승분에 의한 증액 : 6,152천원 · 기본과제 1건 증가 : 3,000천원 · 기획과제 감액 : △6,000천원

관련규정 발췌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
2.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□ 「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기금운용의 과실수입
2.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
3. 출판물 판매 대금
4. 그 밖의 수입

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